

朝鮮王朝後期 警務廳官吏 服裝制度에 對하여

李 康 七

머릿말

朝鮮王朝 時代를 通하여 盜賊과 奸惡한 무리를 逮捕하고, 更을 나누어 夜間에 巡察하는 任務를 띠었던 左右捕盜廳이 併合되어 內務衙門 管掌下에 警務廳으로 改革이 斷行되기는 高宗三十一(1894)年 二月二十七日 政部官制가 三政丞六判書의 옛 機構로부터 開化思想이라는 風潮로 發展하여 宮內部와 議政府로 改革이 되므로서 비롯되었는바, 이는 議政府內에 內務, 外務, 度支, 軍務, 法務, 學務, 工務, 農商務의 八衙門과 그 附屬 機關인 軍國機務處와 都察院, 中樞院, 義禁司, 會計審査院等이 함께 併設되었던 것이다. 이 警務廳의 主要事務로는 營業場, 市會社, 製造所, 教堂, 講堂, 道場, 演藝, 遊戲所, 徽章, 葬式, 彩會, 賭博, 船舶, 河岸, 道路, 橋梁, 鐵道, 電線, 公園, 車馬, 建築, 田野, 漁獵, 人命傷喪, 羣集, 喧嘩, 銃砲, 火藥, 發火物, 刀劍, 水災, 火災, 漂破船, 遺失物, 埋藏物, 傳染病豫防, 消毒, 檢疫, 種痘, 食物, 飲水, 醫藥, 家畜, 屠殺, 墓地, 其他, 有關衛生事務 一切와 罪人搜捕, 證據物蒐集, 그리고 總巡, 瘋癲棄兒, 迷兒, 結社, 集合, 新文雜誌, 圖書 其他 板印等^㉑으로서 그 任務도 從前에 比해 厯大하게 擴充되었고 이 莫重한

任務를 堪當한 初代 警務使에는 當時 左右捕盜大將이었던 李允用이 一八九四年 七月 二十日자로 補任되므로서^㉒ 비롯되었는바 그는 當時新式 服制에 對한 建議을 內務大臣 錦陵尉 朴泳孝에게 請儀하여 閣議의 議決를 거쳐 皇帝의 允許를 받고, 一八九五年 勅令第八十一號로서 頒布施行케 되었는바 때에는 平常時에 着用하는 常服만이 制定이 되었던 것이다. ㉓ 이어 勅令第三百三十號(6.3)로는 各府 警務官 同補 그리고 總巡·巡檢에게 까지도 適用하게 하였으며^㉔ 그로부터 二年後인 一八九七年 勅令第七號(1.14)로는 服制一部를 改正하기에 이르렀고^㉕ 一八九九年 勅令第六號(3.18)로는 本廳을 비롯한 各港口의 警務官의 禮服이 비로소 制定되었던 것이다. ㉖ 그後 一九〇〇年 勅令第三十七·三十八號(10.10)로는 禮服과 常服의 一部가 改正되었고, ㉗ 一九〇二年 勅令第十二號(8.3)로는 常服의 一部가 또 改正되었으며, ㉘ 一九〇五年 勅令第三十九號(7.22)로는 禮服과 常服이 또한 改正되었고. ㉙ 그후 一九〇七年 勅令第一號(7.27)로서 警務廳이 警視廳으로 그 官制가 改編되고 ㉚ 同年 勅令第十號(3.19)와 同年 勅令第二十一號(10.5)로 禮服이 各各 改正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㉛ 이어 勅令第二十九號로 警察官任用令이 頒布되므로서 內務大臣은 警察豫算定額內에서 警視 警部及 巡查를 들 수 있게 制定하였고, 其外 服裝制度는 部分的인 添入과 따라서 職別의 變動으로 인한 不得已한 改正도 볼 수가 있는바 즉 警部大臣의 設置 補任이라던가 警部總管 그리고 警部協辦等의 補任等을 들 수가 있는바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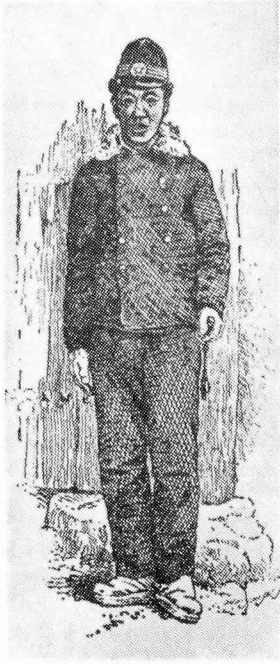
이러한 來歷을 간직한 警察服制에 對하여 그에 따른 變遷過程을 體系化하는 것이 本調査 研究의 目的이려니와 그의 前身인 捕盜廳 當時의 服飾 그리고 監獄署官制의 衣裳도 本研究와 併行하러 하였으나 이는 兵部와 典獄署에서 管掌하였던 機構인 故로 後日 軍服 또는 刑吏服 研究時 學論하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다만 捕盜廳職務에 關하여 文獻을 根據로 略述하므로서 그의 뜻을 살리려 한다.

한편 補盜部長은 補卒을 거느리고 都城內外를 巡察하는바 그는 通符 卽 犯人을 逮捕할때 提示하는 證明牌을 携帶하며 補卒은 허리에 붉은 補繩(일명, 오라줄)을 차게 되었는데 이는 도둑이나 犯法者를 逮捕할때 結縛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捕廳의 位置는 左捕廳이 中部 貞善坊 現光化門 郵遞局 자리이며 右捕廳은 西部의 瑞麟坊으로 現在의 廟洞團城社자리에 各各 位置한것으로 짐작이 가고 左捕廳은 現在 城北區 敦岩洞五一二番地로 日帝때 옮겼고 右捕廳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未詳하다.

二、甲午改革以後의 服裝制度

우리나라 固有의 制服, 즉 이제까지 상투를 조여틀고 그머리를 수건으로 둘러위에 붉은 상모가 달린 검정색 병거지를 비스듬이 눌러쓰고 흰바지 저고리 위에는 궁둥이를 덮을까 말까한 검정색 더그레를 걸치고 붉은 포승을 허리에 느러차고 옥모방망이로 그 모승을 가춘 左右捕廳의 捕卒들도 머리에는 해가리개(챙)와 鍍金한 帽標가 달린 헬멧型的 帽子와 어깨, 허리를 조이는 듯한 윗도리인 上衣, 좁은 가랭이 홀때바지인 下衣, 그리고 이제까지 짚신 草屨이던 발에는 검정색 가죽구두를 신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服飾의 改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같이 새로운 體制로 服裝의 制度가 改革이 되기는 이미 머리에서 밝힌바 있



始制當時의 巡檢常服

거니와 高宗三十二年 四月一九日자로 製式令이 頒布되므로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이는 그後 年輪을 거듭 할수록 常服과 禮服으로 區分하여 着裝의 時機, 그리고 位階의 差等을 表示하는 形態로 變貌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를 그禮·常服의 區分에 따라 變遷된 年代順으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가, 帽子

1. 禮帽

禮帽는 最初始制當時부터 着用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四年後인 光武三年(1899) 三月十八日 勅令第六號가 頒布되므로부터 使用하기에 이르렀고, 그後 光武四年 十月十日 勅令第三十七號, 光武六年 八月五日 勅令第十二號, 光武十一年 三月十九日 勅令第十號로서 各各 下半部の 橫金線이 增減되어 差等을 이루었는데 이를 帽子의 部分別로 그差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頂蓋(모자의 윗덮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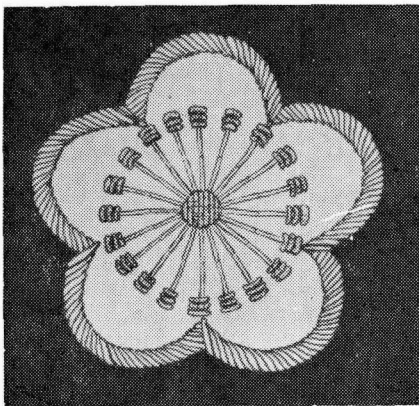


그림 1. 李花章

帽자의 윗덮개部分을 말한다. 地質은 衣服의 色彩와 같은 濃紺絨이며 그正中에는 李花를 繡飾하는 것으로 그 地質은 白色金飾이며 周圍外邊은 金線兩股織으로 둘러우며, 光武九年七月二十二일부터는 警務官에 限하여 李花 地質은 紅絨質로 하고 그외는 모두 從前

과 같이 하였다. (그림 1 참조)

(2) 上半部

上半部란 頂蓋와 下半部를 連結하는 部分을 말한다. 上半部 接圓處 前後左右에는 階級別로 豎金線兩股織이 各各 差가 있는 것으로 警務使는 三條、警務官은 二條、總巡은 一條로 各各 區分 表示하였다.

(3) 下半部

下半部란 머리가 드러나는 곳으로 地質은 白絨을 使用하였고、光武九年 七月 二十二日차로 警務官에 限해 紅絨을 使用하였다. 따라서 階級을 表示하는 線章은 位階에 따라 差가 있는 것으로 이를 年代別로 階級에 따라 差等を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禮帽下半部線章一覽表

階級	年 月 日	警 務 大 臣	警 務 使	協 辦	局 長	局 長 奏 任	警 務 官	外 方 警 務 官	總 巡	外 方 總 巡
光武 3年	10/18	金線兩股織五分	金線兩股織七分大線二條	七條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光武 10年	10/10	金線兩股織五分 大線二條 小線八條	金線兩股織七分大線二條 小線二條	七條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光武 8年	8/3	金線兩股織五分大線二條	金線兩股織五分大線二條	四條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光武 10年	10/15	金線兩股織五分大線二條	金線兩股織五分大線二條	五條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隆熙 10年	10/15	警視總監 小線一條 大線一條	警視副監 小線一條 大線一條	四條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4) 正面表章

正面表章이란 帽標를 말하는 것으로 바탕색은 濃紺絨이며 그 위에 銀線金蕊李花를 繡粧하여 附着하였다.

光武九年 七月 二十二日 制止된 禮帽
① 警務使 ② 勅任局長 ③ 奏任局長 ④ 警務官 ⑤ 總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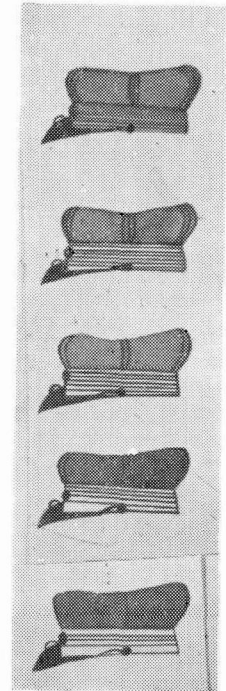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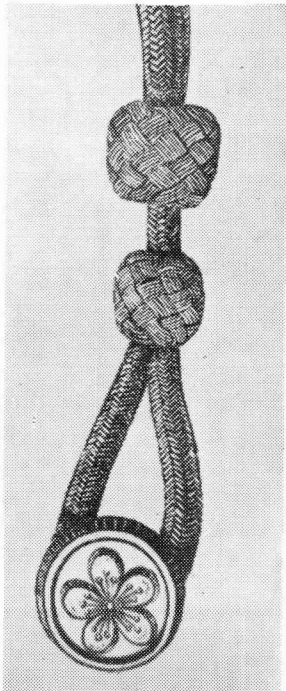


그림 2, 頤紐



(5) 頤紐

頤紐란 帽子의 턱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金絲로 짜서 늘이고 줄이 게 되었는바 帽子 左右 前庇 즉 繩 끝에 달게되었는바 여기에는 鍍金鑄製 槿花形 단추를 달게 되었다(그림 2 참조)

(6) 前庇

帽子앞에 달리는 해가리개 즉 모자의 繩을 말한다. 이는 靑色 가죽 제품으로 表面에 대고 안쪽에는 萌黃色을 쓰다가 光武九年 七月 二十二日부터는 靑색만을 使用하였다.

ㄴ, 常帽

最初制當時의 常帽는 위頂蓋는 좁고 아래는 퍼진 모양으로 現今의

렐넛형인바 그地質은濃紺絨으로서頂盖에는銀色李花章이 있고正面表章은警務使로부터總巡에 이르기까지는金色李花章이고巡檢만은白銅製인바 그形態에 있어서는枝葉을 아래에서結束하고 그中心에는李花를裝飾한模樣이다.

橫章은自絨위에階級別로 그線이差가 있어 다음一覽表와 같으며 따라서常帽에對한部分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頂盖와 上半部

最初 常帽의 頂盖裝飾은李花를銀色으로着裝하였고 그後光武九年七月二十二日부터는李花白絨質에金絲飾을하고外邊周圍에는黑絲兩股織을돌리었다. 한편 上半部地質은亦是濃紺絨으로서光武四年十月十日以後變함이 없다. 다만前後左右에位階를表示하는堅黑小線이三條、二條、一條로區分될 뿐이다.

(2) 下半部

下半部는白絨으로돌리고橫線章은黑絲線으로階級에 따라差가 있는것으로그內容은別表와 같다.

(3) 正面表章

正面表章은禮帽의表章과 같은形態로하고, 이는鍍金製로서그의지름은中心이五分으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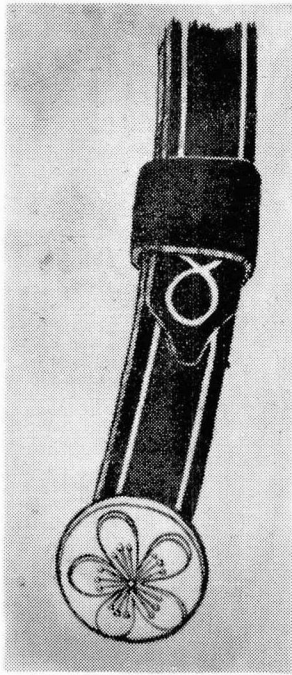


그림 3. 始制當時의 頤紐

(4) 頤紐

最初始制當時에는黑革製로서紐는金色圓形內에李花飾을하였고光武四年十月十日부터는黑絲兩股織으로서左右釦子는鍍金鑄製槿花形을使用하였다.

(5) 前庇

前庇는表面이黑革製이며안쪽은萌黃을使用하다가光武九年七月二十二일부터는深青色을使用하였다.

常帽上下半部線章一覽表

階級	光武九年		光武十年		光武十一年		光武十二年		光武十三年		光武十四年		光武十五年		光武十六年		光武十七年		光武十八年		光武十九年		光武二十年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上半部	下半部
警務大臣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三條
協辦警務使(總務官局長)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二條
警務官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外方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總巡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權任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巡檢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一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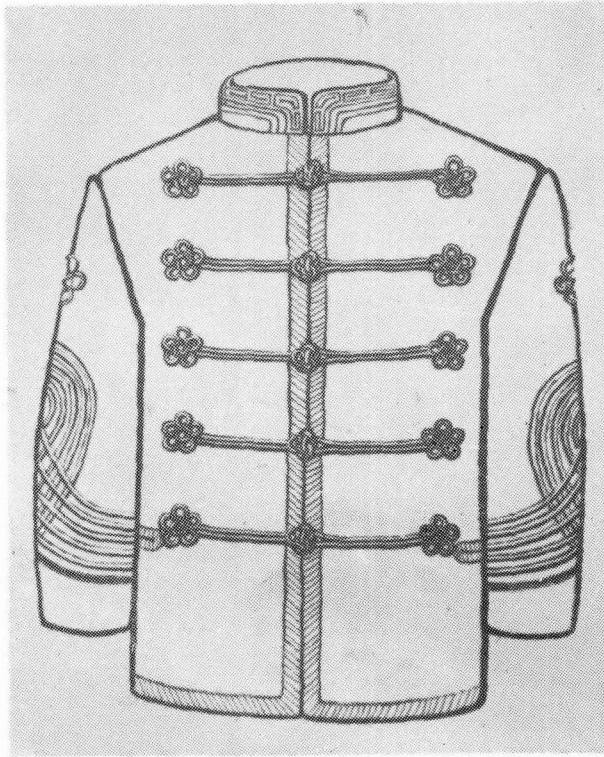


그림 9. 胸 部

(2) 胸部 및 後裾
禮衣全體의 品質은 濃紺絨이며, 그製式에 있어 始制로 부터 몇해동안은 衣領에 이어 胸部正中에 合襟하게 되었고, 길이는 體形에 따라 臀部에 이르게 되었는데 앞술기에는 衣領界線에 이어 黑色廣織線을 둘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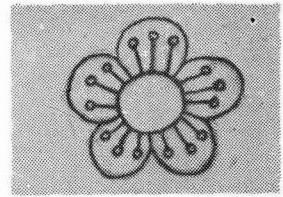


그림 6. 始制當時의 常帽頂蓋 李花章



그림 7. 始制當時의 正面表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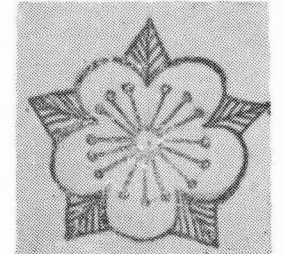


그림 8. 光武 11年 3月 19日 當時의 正面表章

다. 또한 단추와 단추고리는 黑絲圓織으로 매듭을 造成하여 衣領을 連해 다섯개를 달았는데 그 線을 連해 左右胸部에 權花를 各各 다섯씩 縫着하였다. (그림 9 胸部參照)

이러한 製式은 光武十一年 三月 一九日字로 改正이 되었는데 製式令에 依하면 이제까지의 直衿은 交衿式으로 改正되고 따라서 단추도 黑絲圓織 매듭에서 鍍金製 李花形으로 左右에 各 일곱개씩 附着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림 10 參照) 따라서 뒷판(背面)에도 이제까지 左右에 黑色 圓織으로 縫着하던 製式이 後裾 즉 등술기 正中을 連한 下部에는 밑으로부터 위로 五寸를 直割하여 兩傍 즉 양쪽으로 길이 五寸 너비 一寸의 黑絨으로 上尖下廣式 즉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모양으로 하여 鍍金製 李花 釘子 三個씩을 양쪽에 길이로 上中下에 附着하였다. (그림 11 後裾參照) 그後 隆熙元年 十月十五日字로 警視總監과 副監으로 編制上的 名儀도 改正이 되고 아울러 制服도 改正이 되었는데 그 現定에 依하면 襟章은 一寸四分이며 品質은 緋絨이다. 따라서 그 製式에 依하면 上緣側線은 二條이고 下緣은 一條로 하며 上下緣에 接하여 平織二條를 施文하게 되었다. 그리고 衣地는 같은 濃紺絨으로서 길이는 亦是 體形에 따라 腕骨에 이르고 단추는 金色圓形內에 李花, 그리고 大徑이 七分五厘이고 小徑이 五分으로 하게 하였다.

(3) 袖 章

袖章이란 소매에 달린 着裝者의 職級表示로서 이는 干先 소매부리(袖口)에는 紅色絨이나 白色絨을 棼부하게 되었고, 그다음으로 原地質과 絨部 界線을 金絲圓織으로 一條를 둘러게 되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袖章이 表現되는 것으로 文獻上에는 이 모양을 又字形이라고 明示하였는데 이는 界線에서 어깨쪽으로 交叉하여 윗쪽을 右圓형으로 돌린 모양이다. 이같은 職級이 上位일수록 더하며 下位로 내려갈수록 遞減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위 즉 又字線을 둘러 一部分 正中에 李花章을 同一品質로 繡飾하게 되었다(그림 12 참조).

기袖章과 袖口색깔에 對해 變遷된 過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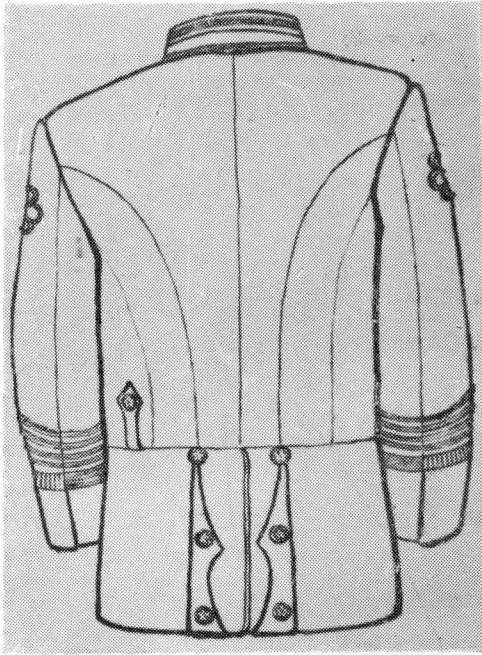


그림 11 後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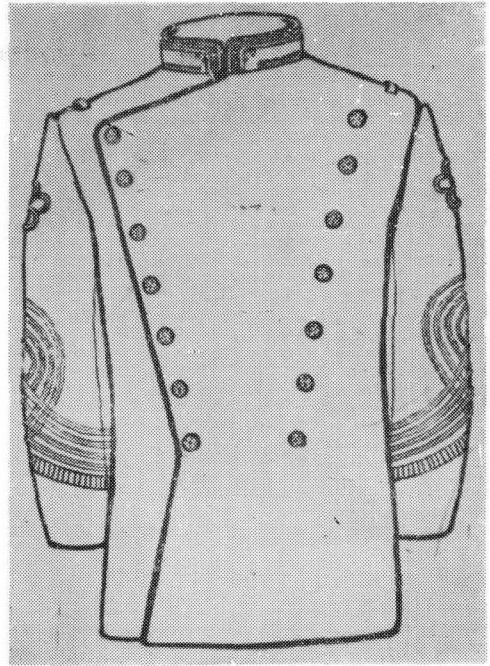


그림 10 胸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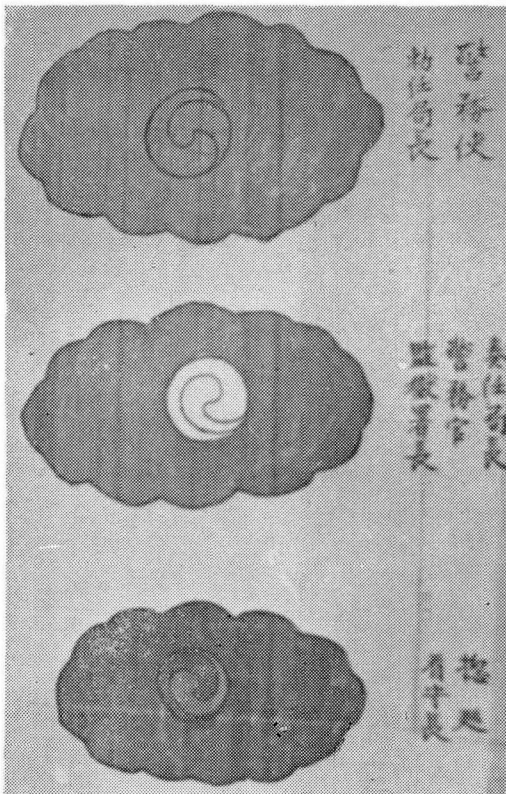


그림 13 禮肩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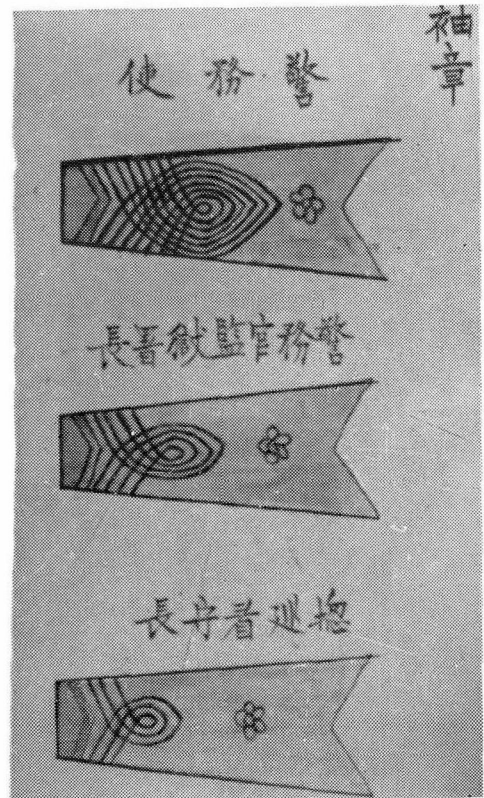


그림 12 袖章

禮衣年度別袖章改正一覽表

凡例 (1) 袖口色 (2) 金絲廣織 (3) 又字線
(4) 李花繡飾 (5) 袖口釦子

階級	光武 18年	光武 19年	光武 22年	光武 28年	光武 30年	光武 33年
警務使	①紅絨條 ②一絨條 ③四絨條 ④李花	①紅絨條 ②一絨條 ③七絨條 ④李花		①白絨條 ②一絨條 ③五絨條 ④李花	①紅絨條 ②一絨條 ③八絨條 ④李花	①紅絨條 ②一絨條 ③四絨條 ④李花
警務部大臣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協辦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勅任局長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奏任局長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警務官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李花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李花	①紅絨條 ②一絨條 ③四絨條 ④李花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李花
外方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總巡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外方					①上絨條 ②同上絨條 ③同上絨條 ④同上絨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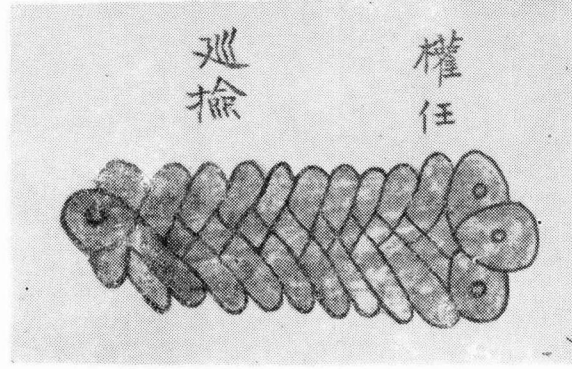


그림 14. 禮肩章

一、常衣
常衣는 通常着用하는 勤務服으로서 衣制가 改革되면서 最初로 制定되었던 것이다. 이 常服製式에 따르면 始制當時는 品質이 濃紺絨으로서 衣領의 幅은 一寸二分이며 소매 길이는 손목에 이르르고, 총길이는 髑骨에 이른다. 그리고 衣領에 이어 앞깃을 連해 아래 단에는 七分黑毛絨을 蛇腹飾形으로 全部 둘러우며 주머니는 양옆구리에 各三寸五分의 길이로 만들고 윗주머니는 左測에만 달게 하는 한편 단추는 隱釦로 하였다 그리고 位階가 나타나는 袖章은 大線과 小線으로 表示하게 되었는바 大線은 黑毛絨으로 너비 一寸二分으로 한줄을 小線은 蛇腹組黑毛絲一分規格으로 둘러게 되었는바 이는 位階에 따라 禮衣袖章과 같이 增減하게 되었다. 이 常服에 對하여 始制로부터 變遷된 過程을 年代順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二、肩章

最初始制當時의 常服에는 肩章이 制定되지 아니하고 다만 袖章만이 表示된 것이고, 光武三年三月十八日자로 禮服이 制定되므로 서 비로소 肩章을 着裝하게 되었는바 製式은 金絲廣織으로 다만 上頭나 下端이 마치 반달형으로 둥글린 모양에 正中에는 銀絲로 李花를 繡 놓아 四個나 三個로 差 등을 둔 것이고, 後 光武四年十月十日에 制定된 것에 依하면 亦是 같은 模樣에 正中에는 李花와 太極, 그리고 銀으로 鑄造된 鈕을 꿰게 하였다. 한편 常服肩章은 白絨으로 上頭는 方形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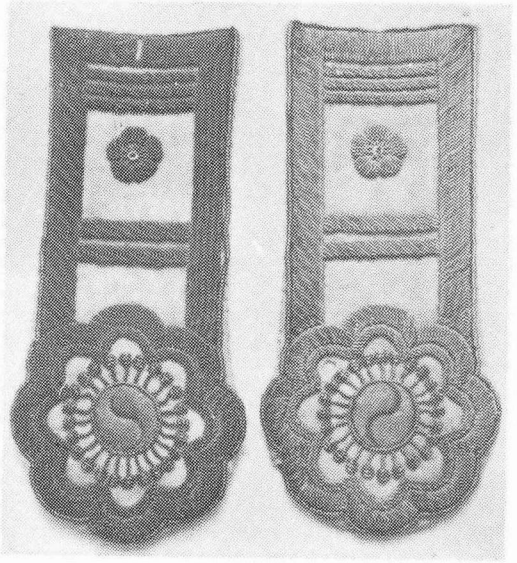


그림 16. 常服肩章(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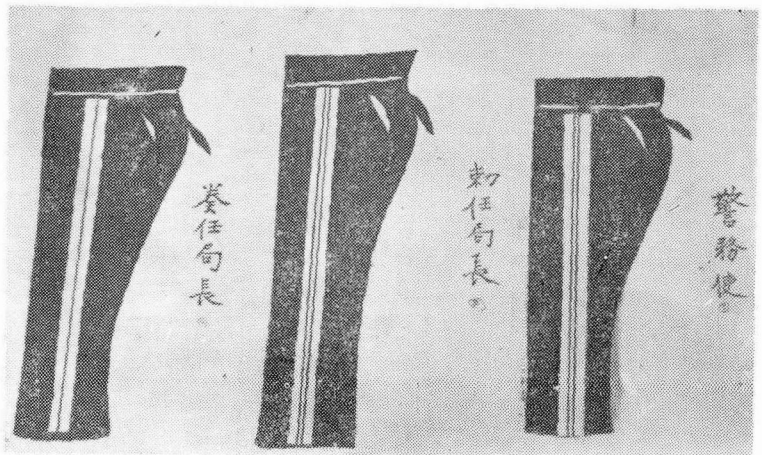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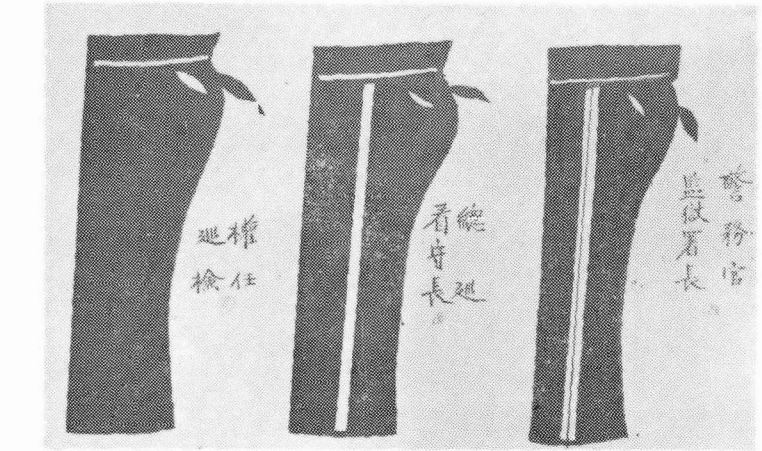


그림 17. 禮袴縫章

를 만들고 李花形釦子 지름六分짜리를 八個附着하였다 (그림 18참조) 그리고 袖章은 總巡이 黃絨線一分一條를, 警務官이 金線一條에 金色李花形釦子 지름三分짜리 一個를, 그리고 警務使는 金線一分一條에 金色李花形釦子 지름三分짜리 二個를 各各 袖口쪽으로 縫着하였다. 그後 光武四年十月十日 改正된 外套의 品質은

濃紺絨이며 形式은 從前과 같이 交衽式이나 다만 단추가 左右에 各七個씩으로 增加하였으며, 袖章은 白絨線 一條를 施條한 위에 金絲兩股織條線과 金星으로 表示하는바 警部大臣은 各三條三個, 警務官은 各二條二個, 總巡은 各一條一個씩 縫着하게 하였고, 同六年八月三日에는 다만 權任 外套만이 白絲線一條를 袖口二寸上에 施條하게 되었으며, 光武九年 七月二十二일부터 施行한 外套條에 依하면 警務使以下總巡까지는 從前品質 製式이 같고 다만 權任은 左右에 金色李花釦子 各六個씩이고 巡檢은 左右에 黑色角釦 各五個씩을 縫着하는한편 袖章에 있어서도 袖

口에서 위로 三寸五分地點에 白絨小線을 一條 그다음으로 金絲兩股織條와 袖口後面에 警務使는 各三條와 三個, 勅任局長과 警務官은 各二條와 二個, 總巡은 一條一個를 縫着하고 權任은 白絨小線一條만이 縫着하고 巡檢은 不付線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 飾帶

飾帶란 禮裝할 때 허리 刀帶위에 着裝하는 것으로 最初始別로부터 後日 服裝이 改正될때에도 別로 變形된 事實이 없다. 이는 品質이 한결같이 赤絲黃織이나 다만 下垂가 銀絲綉과 玉色絲綉, 그리고 赤絲綉으로

區分되며 垂上에 끼우는 金絲環이 三個、二個 또는 一個로 差가 있다. 그리고 隆熙元年 十月 十五日에 制定된 警視總監用 飾帶는 緋絹絲織長이 五尺으로 하였고, 그 兩端에 總 垂는 緋絹絲長이 帶와 같이 六寸인데 圓徑은 一寸五分이며 여기에는 李花章을 銀色으로 지름이 二分五厘짜리 二個를 달게 하였고 警視副監만은 달지 못하게 하였다.

바, 刀 劍

刀, 劍은 禮裝時나 常裝을 할때 着裝하는 것으로 禮裝時, 刀는 常裝時에 着用하며, 따라서 이는 刀, 劍과 刀帶 그리고 刀緒로 區分해야 될 것이다.

셋째, 刀 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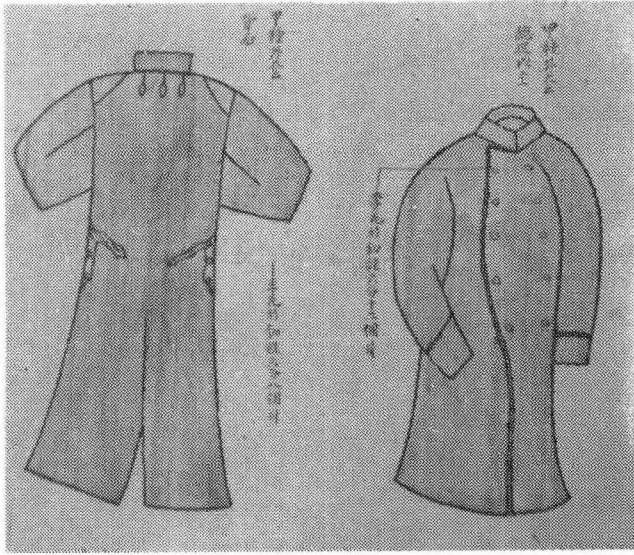


그림 18. 甲種外套

刀劍에 있어 位階의 差等을 둔것은 주로 柄部와 刀身에 彫刻을 施文한 것을 크게 差等을 둔것이다. 警務使의 境遇는 無窮花나 枝葉을 前後面全體에 그리고 太極까지 彫刻을 하고 鍍金을 하였는데 그 以下는 三分의 二、或은 三分의 一로 區分하였고 隆熙元年 十月 十

五日에는 中身은 鍊鐵이며 刀身에는 金色李花唐草를 施文하는 한편 柄部 즉 자루에는 黧甲을 얹이고 絲金線三條를 둘러고 背面을 덮은 金具에는 金色이요 그 밑 바탕은 李花唐草를 施文하였다.

둘째, 刀, 劍帶

刀, 劍帶는 주로 刀·劍을 佩用할 때 使用하는 것으로 이는 金絲廣織이나 黑革製를 表面으로 하고 裏面은 深青色絨質로 하였다. 그리고 鈞環은 두개를 달아 平常時와 乘馬時에 使用토록 하였고 앞 裝飾은 鍊製로 太極紋樣이 彫刻되었다(그림 21 참조).

셋째, 刀緒및正緒

刀緒란 常裝時 着用할때 使用되는 刀柄에 附着하는 黑絲織製를 말하는 것이며 正緒란 禮裝時 刀柄에 附着하는 金絲製를 일컫는 것인바, 隆熙元年 十月 十五日 製式條에 依하면 總은 金線으로 長이 帶와 五分徑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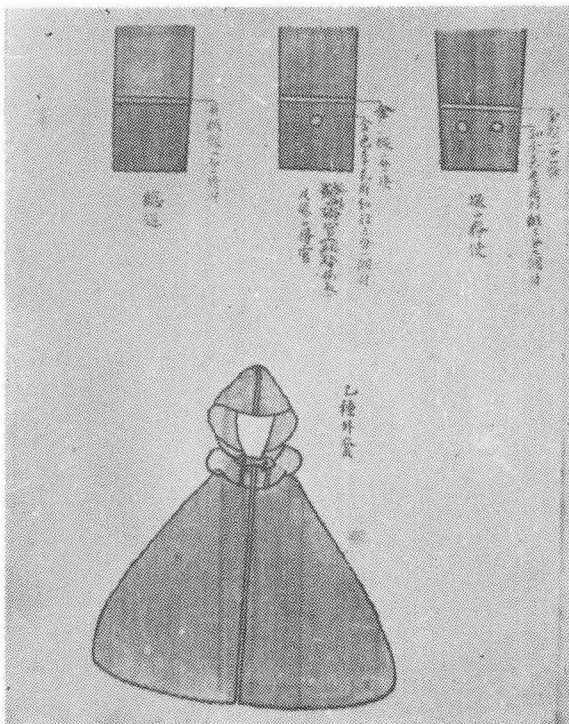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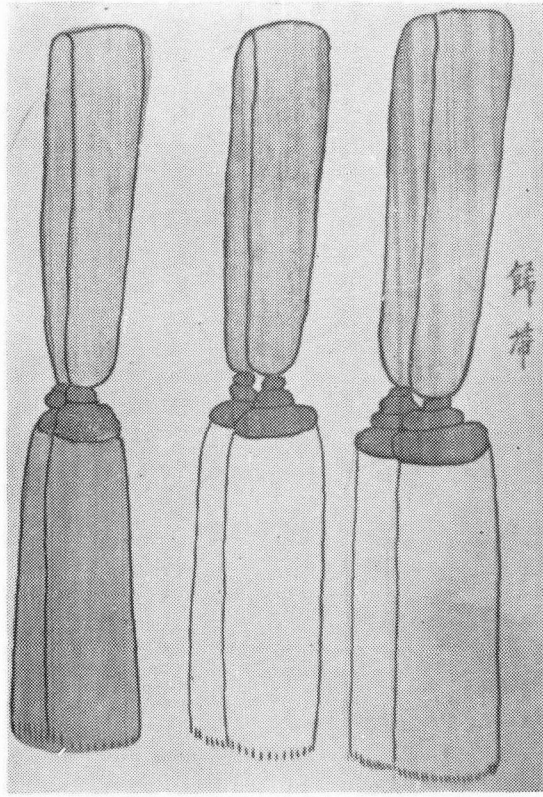


그림 19. 袖章과 乙種外套

로 中央에서 一寸이며 緒 즉 끈은 金絲圓打徑一分五厘에 길이가 三尺二寸을 折半으로 하고 兩端을 合하여 總을 달게 되었다.



(3) 總巡用 (2) 警務用用 (1) 警務使用
그림 20. 飾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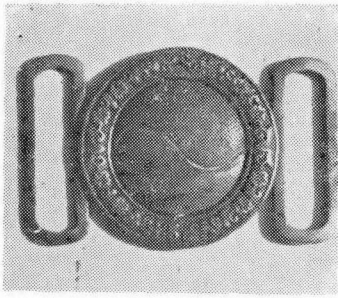


그림 21, 刀帶 앞裝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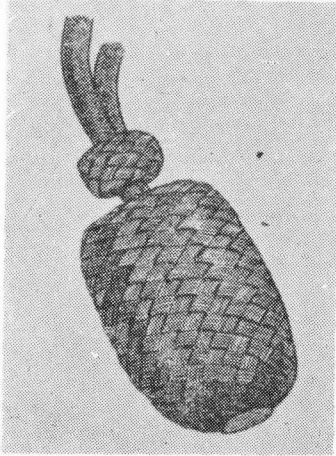


그림 22, 正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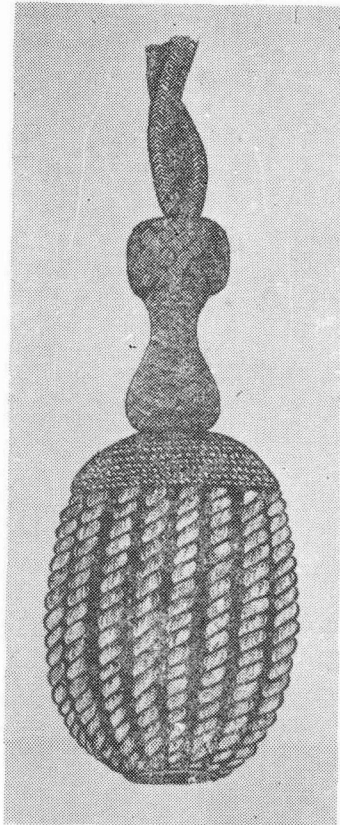


그림 23, 刀緒

맺는 말

우리나라의 官服制度는 百濟古舍王二十七年(二六〇)年과 新羅法興王七(五二〇)年에 이미 服色으로서 官等の 差等을 삼았고, ② 後金春秋가 唐에 請兵하러가서 唐의 官服制度를 들여오므로서 制度化되었다. ③ 後 高唐麗太祖는 新羅의 制度를 그대로 承襲하다가 光宗十(九六〇)年에 비로소 百官의 公服을 定하여 上下等級의 尊卑를 밝혔으나 顯宗元年(一〇一〇)十一月에 契丹의 聖宗이 四十萬大軍으로 侵入한 까닭으로 모든 文籍이 散佚되어 制度와 施行을 詳細히 알 수 없게된 까닭으로 後 毅宗때 平章事 崔允儀가 祖宗의 憲章을 몽고 唐의 制度를 가려서 詳定古今禮를 만드니 위로는 王의 冕服으로부터 百官의 冠服을 制定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④ 後 明나라가 新興體制로 이어나 明으로부터 恭愍王에게 冠服을 賜與하게 됨에 따라 다시금 衣冠文物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이어 禡王十三(一三八七)年六月에는 紗帽團領을 着服하고 品帶로서 差等을 두게 하였다. 이러한 制度는 朝鮮太祖 李成桂가 執權한 後에도 苦干의 變動은 있

였으나 大部分 承襲되었던 것이나 이는 經國大典이 世祖六(一四六〇)年 부터 盧思愼, 崔恒等に 依해 治國法典을 만들고 그후 改修增補하여 成宗에 이르러 六卷四冊으로 完成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端宗二(一四五四)年 十二月에는 文武官의 區別과 位階의 差等을 뚜렷이 分別하기爲 해 胸背制度가 制定되었으니 王族은 神獸, 文官은 飛禽, 武官은 走獸로 하여 常服의 各급과 等に 各各 表示하게 되었던 것인바 이는 그後 苦干의 改正은 있었으나 高宗三十二(一八九五)年 四月八日 勅令第七十八號로서 陸軍服裝令이 頒布施行할때까지 存續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悠遠한 歷史를 간직한 우리나라의 官服制度는 朝鮮王朝末 甲午更張이라는 新體制의 수용들이 속에서 西歐式形態의 服裝으로 改革이 되기는 陸軍服裝制度에 이어 두번째로 斷行된 일이다. 이는 最初始 制로부터 輪年을 거듭할수록 制度의 改正, 補完, 添入을 通해 國家를 象徴하고 階級意識이 두드러진 것을 要所마다 施文된 紋樣을 通해 觀察할 수 있었다. 特히 制度上 重復된 部分은 本稿에서는 略하였고 調査와 研究不足으로 未盡한 點이 많을것이나 숨어있는 資料를 發掘하고자 하는 微衷에서 敢히 試圖한 것이니 先學의 叱責을 바라며 아울러 本稿가 나오기까지 物心兩面으로 支援하여주신 正友開發 閔錫源社長님의 厚意에 感謝를 드린다.

[註]

- ① 韓國史大事典 捕盜廳條
- ② 高宗實錄卷之三十二同三十二年申午七月十四日條
- ③ 清選考 下卷 警務使條에 依하면 安尉壽가 開國五〇三年甲午七月 初任者로 記錄되어 있으나 高宗實錄卷之三十二上主七月二十일에 依하면 李允用이 補任되었기에 實錄을 爲主로 하였다.
- ④ 議奏七(開國五百四年 四月五日 至十九日)에 依하면 內部大臣 錦陵尉 朴泳孝는 『警務使 李允用이가 該廳官員의 服制 新式圖本을 報하기로 原件를 奏하야 閣議에 呈하나다』라 하였는바 이는 當時 內閣總理大臣 金弘集閣下 查照로 되었다.
- ⑤ 規制門第六類三〇五頁第六 各府警務官以下服制 五百四年 六月三日 勅

令第三百十號 第一條에 依함

- ⑥ 前掲 百三十七頁 警務使以下服制改正件. 第一條에서 第四條 參條
- ⑦ 光武三年 三月 十八日 勅令第六號 警務使以下 本廳及各港口警務官의 禮帽及 禮裝 頒布條 參照
- ⑧ 規制門 五類二八七頁 第六 警部大臣以下 禮帽 禮裝變通한件 參照
- ⑨ 光武六年 八月 三日 警務使以下 各觀察府摠巡의 常帽及 常裝을 光武四年 十月 十日 勅令第三十八號 警部服裝을 參互하야 變通한件 參照
- ⑩ 光武九年 七月 二十二日 勅令第三十九號 第四十號로 警務使以下 禮帽 禮裝 常裝製式改正件 參條
- ⑪ 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卷之一四頁 十一~十三行
- ⑫ 光武十一年 三月 十九日 勅令第十號 及 隆熙元年 十月 十五日 勅令第二十八號로 警視總監 및 警視副監으로 名稱이 改稱되며, 禮帽禮裝이 改正된.
- ⑬ 世宗實錄卷百十五 同 王二十九年 丁卯三月 癸未條
- ⑭ 文宗元年 辛未六月 辛未條 『아직은 金宗瑞 등의 議論을 따라 및 施行하다 효과가 없으면 安崇善의 議論을 따르게 하였다』
- ⑮ 成宗五年 甲午三月 丙申條
- ⑯ 燕山君四年 戊午 正月 二十四日 庚申條
- ⑰ 中宗二年 丁卯 十月 二十三日 癸巳條
- ⑱ 明宗十五年 庚申八月 癸丑條
- ⑲ 國譯大典會通卷之四. 兵典捕盜廳條
- ⑳ 三江은 지금의 漢江의 部分稱으로 南山西側의 漢南洞一帶의 江과 元曉路 前面의 江, 西江 즉 麻浦로부터 西江에 이르는 江을 稱하는 것으로 推測된다.
- ㉑ 以下는 規制門에서 引用된 內容이기 때문에 註를 밝이지 않는다.
- ㉒ 文獻備考卷七十九 禮考二十四 章服條
(가) 百濟.. 紫衣(一品~六品) 緋衣(七品~十一品), 青衣(十二品~十六品)
(나) 新羅.. 紫衣(一品~五品) 緋衣(六品~九品), 青衣(十品~十一品) 黃衣(十二品~十七品)
- ㉓ 拙稿 陸軍服裝製式에 對하여
月刊文化財六月號(一九七二年 六月 五日) 月刊文化財社刊)
- ㉔ 拙稿 李朝時代 文武官胸背制度에 對하여
月刊文化財第三卷 第七號 月刊文化財社刊)
- ㉕ 前掲 二十三參照

(文化財專門委員)